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호 2219 발의연월일 : 2021년 4월 8일

발 의 자 : 김낙주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노인, 장애인, 유아동 등이 이 용하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여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를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4월 8일 ~ 4월 14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6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공공 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방연마스크"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공공기관"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.
 - 3. "의료기관"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.
 - 4. "보육시설"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5. "다중이용시설"이란 하남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방연마스크 비치 등)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하남시민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 - 1. 공공기관
 - 2. 의료기관
 - 3. 보육시설
 -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- 제4조(홍보 및 교육) 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, 관련 기관·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예산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.
- 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